



교육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침」 개정 안내

1. 관련

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4748('22.1.28.)

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4815('22.2.3.)

2.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코로나19 관련 지침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침」을 일부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니, 소관시설 생활치료센터 지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지침 주요변경사항

구분	주요내용	비고
시설 임대료	○ 시설(공공 및 민간) 이용 시 시설 주체와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부대시설에 손실보상 대상이 아님을 사전 설명 및 협의 필요	권익위 시정 권고 사항
협력 병원	○ 시·군·구에서 생활치료센터 지정 시, 관할 보건소를 협력병원으로 지정 가능하나, 전원 가능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연계병원으로 추가 지정 필요	개선 필요사항 반영
입소 대상	※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함 ○ 경증 이하 혹은 의료적 조치의 필요성이 낮은 감염병 환자(이하 입소자) - (일반생치)확진환자 중 입원 고려 위험요인이 없고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등 - (거점생활치료센터) 확진환자 중 강화된 의료 모니터링이 필요하거나, 입원 고려 위험요인이 있더라도 증상을 고려하여 입소가 가능하다고 시·도 환자관리반 의료진이 판단한 경우 등	관련지침 개정사항
환자 모니터링	○ 日 2회 모니터링(1회 이상 전화면담) - 유증상 지속, 증상 악화 등으로 전원 가능성이 있는 환자 등 집중관리 환자는 1일 3회 모니터링(2회 이상 유선 확인), 전원가능성이 높은 경우 취침 전 1회 추가 유선 확인하여 전원 전까지 관리	오미크론 대응대책
전원	○ 입원을 요하는 전원인 경우 지정 연계병원에 우선 이송하되, 지정된 연계병원이 없거나 이송이 어려운 경우 시·도 환자관리반에서 의료기관에 전원 조치	관련지침 개정사항
치료제	○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를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항체치료제(주사제), 먹는 치료제 등의 처방 및 투여 가능	관련지침 개정사항

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침(1-3판, 22.1.28.) 1부. 끝.

교 육 부 장 관

수신자 각실과, 고등교육기관전체, 소속기관, 소속단체, 시도교육청



주무관 우슬기 행정사무관 김은미 학생건강정책 전결 2022. 2. 3.
과장 정희권

협조자

시행 학생건강정책과-860 (2022. 2. 3.) 접수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교육부 14동 (어진동) / www.moe.go.kr

전화번호 044-203-6962 팩스번호 044-203-6438 / woosg20@korea.kr / 대한민국 공개